

#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2020.6. 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강원본부(이하 “강원본부”라 한다)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배정한다.

1.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이하 “강원영서지역”이라 한다)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강원영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제3조(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한도, 특별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 실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 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9. 전입기업
10. 수출관련기업

11. 소재·부품 생산기업
12.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3. 명절·재해 자금
14. 기타 지원기업
15.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강원영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제4조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강원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1. 제5호
2. 제6호 중 강원도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추천기업에 대해 강원본부가 인정한 기업(<별표1> 제6호 4) 해당 기업)
3. 제8호(강원테크노파크가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한 기업 포함)
4. 제9호 중 강원도 전입기업
5. 제12호
6. 제14호 중 강원본부 중소기업애로상담창구를 통해 자금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

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

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강원본부장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지역별 경제사정,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및 업종 제한은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강원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

-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 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 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⑥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 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 ③ 일반지원부문은 제5항에 따른 최대배정가능액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비례배정한다.
- 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 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 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 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 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 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 지원기업)**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3호(명절·재해자금) 및 제14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 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 <별표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본부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 추천서 <별지 제5호 서식>
6.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7. 기술신용정보 대출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8.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에 대해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장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도 감축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4조(기타 사항)** 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대상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0. 3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0. 8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 12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2. 12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 7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 9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7.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②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우선지원한도는 2006. 11월 이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여 배정한다.
- ③ 종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선지원한도 대상 대출취급액은 대출만기시까지 우선지원한도 대상에 포함하며 만기후 대환 또는 연장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 2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 8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10. 7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② 2010.1. 1 ~ 2010. 4. 30 기간 중에 C2자금 최장지원기간(2년) 경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건은 재연장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 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 3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0)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강원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10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강원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3. 6.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

도배정 개시일은 2013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강원본부 총액한도대출과 시행일 전에 취급한 전략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4. 6. 1)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4년 9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강원본부 총액한도대출과 시행일 전에 취급한 전략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4. 8.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6.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5. 10.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금융기관의 2015년 9월 대출취급 실적부터 적용)

부 칙 (2016.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금융기관의 2016년 3월 대출취급 실적부터 적용)

부 칙 (2016. 6.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금융기관의 2016년 5월 대출취급 실적부터 적용)

부 칙 (2017. 5.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1일(2017년 8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6.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2017년 9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8.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강원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8. 6.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7월 1일(2018년 9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2월 1일(2019년 4월 한도 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8.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2019년 11월 한도 배정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6.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6월 15일(2020년 8월 한도 배정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번호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sup>1)2)</sup>	전산 코드
1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업종 영위기업</li> <li>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제조업(C) 3) 건설업(F)</li> <li>4) 정보통신업(J)</li> <li>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li> </ul>	A1
2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li> </ul>	A2
3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고시 2015-101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2015.6.2)한 첨단기술 개발업체와 동 기술을 활용한 첨단제품 제조업체</li> <li>-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li> <li>- 국제특허등록 업체</li> <li>-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마크 획득업체(중전 NT, EM, KT, IT, CT, ET 마크 획득업체 포함)<sup>3)</sup></li> <li>- ISO, JIS, UL, CE<sup>4)</sup> 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업체</li> <li>-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li> <li>- 금융기관의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또는 기술신용정보 대출을 받은 업체(대출금원장에 동 대출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 영업점장 명의 확인서 제출&lt;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gt;) (기술신용정보 대출의 경우 기술력 평가 결과 양호 이상 (T1~T4 등급)을 요건으로 함)</li> </ul>	A3

번호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sup>1)2)</sup>	전산 코드
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의거 환경부가 녹색기업으로 선정한 제조업체</li> <li>-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제조업체</li> <li>-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환경성적표지(EDP)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제조업체</li> <li>-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 (Good Recycled product : 우수 재활용품 품질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li> <li>-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li> <l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기업</li> <li>-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li> <li>- 기타 환경정화설비 생산업체 등 환경개선관련 제조업체</li> </ul>	A4
5	연구개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li> </ul> <p>* 연구개발비: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등</p>	A5
6	추천기업 <sup>5)</s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원도청 선정 유망중소기업 및 향토기업(장수기업)</li> <li>2)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및 강원도청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li> <li>3) 춘천상공회의소, 원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lt;별지 제5호 서식&gt;) *제조업 중소기업에 한함&lt;소상공인 등 개인기업 제외&gt;</li> <li>4) 강원도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lt;별지 제5호 서식&gt;)</li> </ol>	A6

번호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sup>1)2)</sup>	전산 코드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p>- 영서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업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원도내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lt;별표1-1&gt; 참조)</li> <li>2) 시계 제조업(KSIC: 274)</li> <li>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KSIC: 30)</li> <li>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KSIC: 26)</li> <li>5) 건설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생산업체(KSIC: 23322, 23991)</li> <li>6) 군부대 또는 군 관련기관으로부터 적격인증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는 음식료품 제조업체(KSIC:10~11)</li> <li>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업법인 중 12.농림수산업관련기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li> </ol>	A7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p>- 영서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강원도 전략산업, 지자체 및 강원테크노파크 육성산업, 관광업 영위업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제 및 화장품(KSIC: 20422~3)</li> <li>2) 바이오활성소재(KSIC: 10220, 10620, 10742, 10749, 10792, 10801~2, 11121, 20312~3)</li> <li>3) 웰니스식품(KSIC: 10211~2, 10501, 10730, 10794, 10797, 11111, 11209)</li> <li>4) 의약품(KSIC: 211, 212, 213)</li> <li>5) 의료기기(KSIC: 271, 28519, 28909, 31991)</li> <li>6) 세라믹신소재(KSIC: 20129, 24113, 30399)</li> <li>7) 도자기, 타일, 및 유리(KSIC: 20412, 231, 232, 23324)</li> <li>8) 이동통신부품 및 LCD/P 소재(KSIC: 261, 262, 26410, 26429)</li> <li>9) 정밀, 광학기기(KSIC: 272, 273)</li> <li>10) 에너지소재(연료전지)(KSIC: 282)</li> <li>11) 신·재생에너지(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 지열 가스화복합시스템, 폐기물, 수소 등) (KSIC: 28114, 28119, 35114, 35119)</li> <li>12) 환경소재(필터) 및 환경정화(청정멸균기술, EMI부품, 차세대폐기물 처리공정 등) (KSIC: 29172, 29174~5, 390)</li> <li>13) 방재(KSIC: 42203 ~ 4)</li> <li>14) 소프트웨어·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정보서비스업 (KSIC: 582, 620, 631, 61220, 63991)</li> <li>15) 영상·음반산업(KSIC: 5911~5913, 59201)</li> <li>16) 지역혁신센터(RIC) 및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등 (KSIC: 70)</li> <li>17) 디자인산업(KSIC: 732)</li> <li>18) MICARE(KSIC: 71391, 73902, 75992, 86101)</li> <li>19) 기타(생물농업, 생물해양 등)</li> </ol>	A8

번호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sup>1)2)</sup>	전산 코드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20)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아래의 관광사업 영위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체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체 22) 관광기념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	A8
9	전입기업	- 도내 산업단지(국가·지방 및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는 업체 - 강원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강원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이전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중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별표1-2> 참조)	A9
10	수출관련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A10
11	소재·부품 생산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 전문 제조업	A11
12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단,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A13
13	명절 및 재해 자금	- 설, 추석 등 자금성수기에 운전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 - 재해, 노사분규, 연쇄부도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업체	A14
14	기타 지원기업	- 지방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및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구 등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	A15
15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 도소매업(KSIC: 45~47) 2) 운수업(KSIC: 49, 51~52)<택시 운송업(KSIC:49231) 중 개인택시업은 제외> 3) 여행업(KSIC: 752) 4) 음식숙박업(KSIC: 55~56)<주점업(KSIC: 5621)은 제외> 5) 여가업(KSIC: 90~91)<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KSIC: 9124) 및 무도장 운영업(KSIC: 91291)은 제외> 6) 조선업(KSIC: 311) 7) 해운업(KSIC: 501~502)	A16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3)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1-26호)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08-10호)  
NT(New Technology, 신기술인증, 기술표준원)  
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우수품질인증, 기술표준원)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신기술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IT(Excellen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인증, 정보통신진흥연구원)  
CT(Construction Technology, 건설신기술인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T(Environmental Technology, 환경신기술인증)  
4)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인증)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국가표준규격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인증)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 품질인증)  
5) 추천기업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1-1>

강원도내 특산물 목록

구 분	목 록
농산물 농산 가공품류 (65)	감자, 쌀, 더덕, 당귀, 황기, 메밀가루, 메주, 고추장, 된장, 고춧 가루, 참기름, 김치류, 한과류, 미숫가루, 느타리버섯, 인삼, 상추, 배, 들기름, 간장, 청국장, 도라지가공품, 인진쑥가공품, 사과, 복 숭아, 포도, 고추, 피망, 오이, 토마토, 애호박, 찹옥수수, 통마늘, 더덕 가공품, 향토주, 마, 고구마, 도라지, 콩나물, 인삼차류, 찢 빵, 천마, 상황버섯, 메밀썩, 오미자, 딸기, 개량산머루, 절임류, 양파, 콩, 울무, 참깨, 들깨, 기장쌀, 좁쌀, 파프리카, 시래기, 탁 주, 약주, 야콘, 복분자, 찌는 떡, 치는 떡, 연근, 두부류
축산물 (10)	한우고기, 계란, 벌꿀,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유, 재래돼지고기, 오리 고기, 오리가공품, 우유류
임산물 (10)	도토리 목가루, 잣, 표고버섯, 산채류, 산양삼, 가시오갈피 가공품, 송이가공품, 산양삼 가공품, 오죽잎 가공품, 곰취
수산물 (20)	들깍, 미역, 다시마류, 건오징어류, 젓갈류, 황태, 조미오징어, 붉은 대게살, 횡감용 오징어, 횡감용 가자미, 횡감용 송어, 횡감 용 가리비, 횡감용 전복, 횡감용 우렁쉥이, 냉동오징어, 냉동 도루 묵, 냉동 가리비, 냉동 전복, 냉동 북방대합, 훈제송어

<별표 1-2>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분류기준

구 분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 10차)	업 종
제 조 업	C10~C34	업종제한 없음
건 설 업	F41~F42	업종제한 없음
운 송 업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단, 본사가 강원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한함)
	H493	도로 화물 운송업 (단, 본사가 강원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한함)
	H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단, 본사가 강원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한함)
정보통신업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0221	프로그램공급업
	J61299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M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M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M714	시장조사업(여론조사업 제외)
	M71531	경영컨설팅업
	M72122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N75994	포장 및 충전업	



<별표2>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10차)
주점업	I56211 일반유흥 주점업
	I56212 무도유흥 주점업
	I56213 생맥주 전문점
	I56219 기타 주점업
금융관련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L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L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도박장	S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S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S91291 무도장운영업
미용업	S96111 이용업
	S96112 두발미용업
	S96113 피부미용업
	S96119 기타미용업
안마업	S96122 마사지업

<별표3>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sup>1)</sup>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sup>2)</sup>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      년      월말 현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일반지원부문		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전월말 기준	건    수						
	지원금액						
월중 변동 내역	신    규 <sup>1)</sup>	건    수					
		지원금액					
	만기상환 <sup>2)</sup>	건    수					
		지원금액					
	중도 <sup>3)</sup> 전액상환	건    수					
		지원금액					
	중도 <sup>3)</sup> 일부상환	건    수					
		지원금액					
	지원종료	건    수					
		지원금액					
	기    타 <sup>4)</sup>	건    수					
		지원금액					
금월말 기준	건    수						
	지원금액						
증      감	건    수						
	지원금액						

- 주 : 1) 대환, 만기연장 포함  
 2) 대환, 만기연장을 한 경우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에 준하여 보고  
 3) 결제모점 및 자점에서 기존 지원자금 대출건에 대한 중도상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고  
 4) 휴폐업, 최종부도 등

- 붙임 : 1.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1부.  
 2.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1부. 끝.

(작성자 직위 :                      성명 :                                            )

<별지 제3호 서식>

##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      년      월중)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백만원, 연%)

신청정보				업체현황										대출내역									
일련번호	기관코드	각행관리번호 <sup>1)</sup>	신청사유 <sup>2)</sup>	지원부문 <sup>3)</sup>	지원부문여부 <sup>4)</sup>	신용등급 <sup>5)</sup>	업종 <sup>6)</sup>	업체소재지 <sup>7)</sup>	업체명	사업자구분 <sup>8)</sup>	법인등록번호 <sup>9)</sup>	사업자등록번호 <sup>10)</sup>	대표자성명	자금구분 <sup>11)</sup>	취급점명	취급점소재지 <sup>12)</sup>	대출일 <sup>13)</sup>	만기일 <sup>14)</sup>	대출기간	대출금액	금리 <sup>15)</sup>	채권보전 <sup>16)</sup>	

- 주 : 1) 개별 대출건에 대한 고유 계좌번호, 업체당 "신규취급실적" 건별로 기재(업체당 신규취급실적이 한건 이상인 경우 건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신규" / "대환" /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  
 3) 지원부문별 코드는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4) 일반지원부문 해당시 "0", 전략지원부문 해당시 "1", 전략지원부문 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대출취급한 경우 "2", 특별지원부문 해당시 "3", 최종배정월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4"로 기재  
 5)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재, 금융기관이 SOHO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에 별도의 신용등급을 부여한 SOHO 대출의 경우 "SOHO"라고 표시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최종개정분) 5자리 숫자 기재  
 7) 광역시 지역은 시 단위,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도/시·군 단위로 기재 : 예) 대전, 경남양산  
 8) "개인" / "법인" 으로 구분하여 기재  
 9) "-" 생략, 법인사업자만 법인등록번호란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10) "-" 생략  
 11) "시설" / "운전" 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및 서울특별시 중 기재  
 13) 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기한연장인 경우 당초 상환기일을 기입  
 14)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  
 15) 대출취급시 적용금리를 기재(단, C2자금 지원에 따른 금리감면은 반영하되 이차보전대출 금리는 차감하지 않음)  
 16) "순수신용"(개인 및 법인에 의한 보증 대출 포함) / "담보" / "보증"(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보증) / "혼합"으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      년      월중)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백만원, 연%)

변동전보고내역							변동보고내역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sup>1)</sup>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금 구분	취급 점포명	변동전 잔액	변동 일련번호 <sup>2)</sup>	변동 사유 <sup>3)</sup>	변동사유 발생일 <sup>4)</sup>	변동 처리일 <sup>5)</sup>	변동 금액	변동후 잔액	비고

- 주: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관련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휴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 기재, 특히 중도(전액·일부)상환의 경우 결제모점 및 자점에서의 기존 지원자금 대출건에 대한 중도상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고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휴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만 기입(예: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 기재)

##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 추천서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 종 : (KSIC : )

■ 대 표 자 명 :

■ 추 천 사 유 :

20 . . .

추천기관 : (인)

<별지 제6호 서식>

##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귀하

아래 대출은 기술평가인증서를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 업체명 :
- 대 표 :
- 사업자번호 :
- 계좌번호 :
- 대출일 :
- 대출금액 :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별지 제7호 서식>

## 기술신용정보 대출 확인서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귀하

아래 대출은 기술신용정보를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 업체명 :
- 대 표 :
- 사업자번호 :
- 계좌번호 :
- 대출일 :
- 대출금액 :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